

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736
------	-----

2009년 2월 25일
교육문화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『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』 의원들이 『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』에 포함 되도록 한 규정을 “서울특별시의회 의원”으로 수정하고, 문화재와 관련한 학식과 경륜이 있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에 “시민”을 추가하고,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”을 “서울특별시의회 의원”으로 함(안 제3조제3항 제1호).
- 나. “문화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대학교수, 전문가”를 “문화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대학교수, 전문가, 시민”으로 함(안 제3조제3항 제2호).
- 다. “서울특별시 문화국장, 서울역사박물관장”을 “서울특별시 관련 공무원”으로 함(안 제3조제3항 제4호).
- 라. “위원회 활동의 홍보를 위하여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”로 함(안 제3조제5항 신설).

3. 참고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항제1호 “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례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”을 “서울특별시의회 의원”으로 함.

안 제3조제3항제2호 “문화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대학교수, 전문가”를 “문화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대학교수, 전문가, 시민”으로 함.

안 제3조제3항제3호를 삭제함.

안 제3조제3항제4호 “서울특별시 문화국장, 서울역사박물관장”을 “서울특별시 관련 공무원”으로 함.

안 제3조제5항에 “위원회 활동의 홍보를 위하여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”를 신설함.

수정안 조문 대비 표

<p>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합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 <p>제6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.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.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<p>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, 출석위원 작성명·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,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간사) ①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</p> <p>② 간사는 서울시 문화재과장이 된다.</p> <p>제9조(의견청취)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5조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6조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7조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8조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9조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0조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1조(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제정안과 같음)</p>
---	---

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해외에 흩어져 보관되어 있는 문화재를 다시 찾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활동을 위한 지원
2.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 관련 실태파악 및 자료 구축
3.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각종 법률 자문
4.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문
5. 그 밖의 위원회에서 해외 문화재 반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2. 문화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대학교수, 전문가, 시민
3. 서울특별시 관련 공무원
- 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1.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2.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·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· 의결한 것으로 본다.
- ⑤ 위원회 활동의 홍보를 위하여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홍보대사를 위촉 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3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4.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, 출석위원 직·성명·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고,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.

제8조(간사) ①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문화재과장이 된다.

제9조(의견청취)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·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